

# 「(가칭)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」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9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의 영어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「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」를 운영하였으나, 그간 달라진 교육환경 및 사회적 관심 저하로 운영 안정성 및 정책 효과 등이 감소함에 따라 '20년 8월 「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」 운영을 종료하였으며,
- 나.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과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, 시설을 재정비하여,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여,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, 다양한 미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
- 다. 이에,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(가칭)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9호

- 평생교육법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제1항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제1항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「(가칭)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, 학습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,
  - 다양한 영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급변하는 학습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  - 또한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 직영 시 정원 증가, 인건비 증가 등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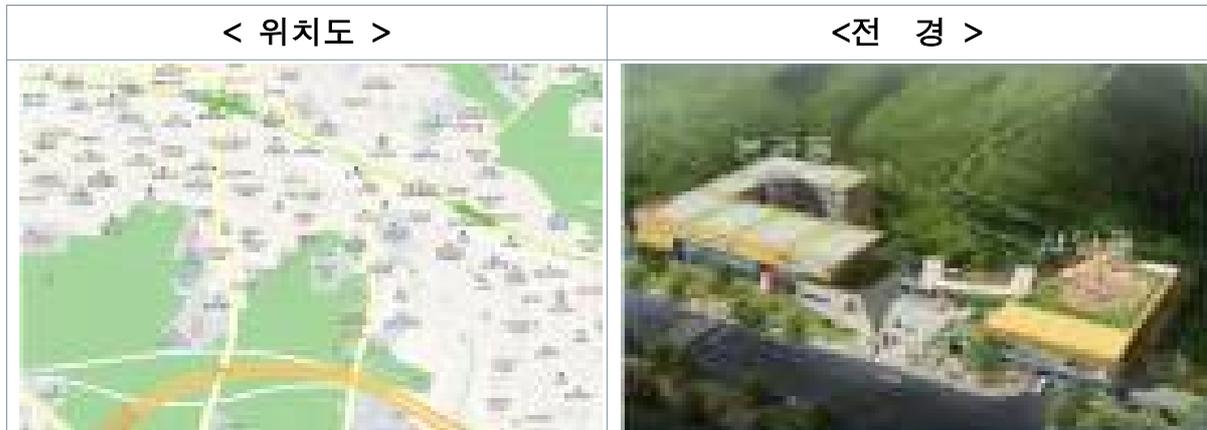
#### 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서울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건물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70
- 시설규모 : 부지 20,391m<sup>2</sup>, 건물연면적 7,040m<sup>2</sup>(지하1, 지상3)
- 준공일자 : 2010. 3. 26.
- 주요시설 : 강의실, 대강당, 소강당, 도서실 등
- 이용대상 : 서울시민

○ 위치도 및 전경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 9개월(2022.4.1.~2024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2,640백만원('22년 예산편성 추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480백만원, 사업비 810백만원, 운영비 700백만원,

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등 65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○ 평생교육법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
○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

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,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

① 시장은 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 심세영 (☎2133-3992)